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9.

발 의 자 : 배현진 · 김승수 · 안상훈
김예지 · 고동진 · 최은석
김재원 · 조은희 · 서일준
신성범 · 김장겸 · 엄태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올해 7월 후불제 여행상품으로 4천 명에게서 120억 원대 적립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여행사가 잠적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여행 폰지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.

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 및 공개하여, 소비자가 상품 결제 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함.

그러나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 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근거가 없어,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만 개 여행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임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

험 가입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,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자 함(안 제9조의2 신설).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) ①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험 가입 등과 관련한 조사·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또는 「보험업법」 제175조제1항의 보험협회 등에 보험 가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보험 가입 등의 정보를 수집·관리한 후 이를 국민 및 관계 행정청에게 공개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 등의 정보 수집·관리 및 공개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) ①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험 가입 등과 관련한 조사·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또는 「보험업법」 제175조제1항의 보험협회 등에 보험 가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③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보험 가입 등의 정보를 수집·관리한 후 이를 국민 및 관계 행정청에게 공개할 수 있다.</u> <u>④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 등의 정보 수집·관리 및 공개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</u>

	<u>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--